# 공간조정회의 우선대관 가이드라인

## 제1조(목적)

중앙대학교 교내 학생자치공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 유지 관리함에 있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치공간분배의 투명성과 질서 유지 및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정의)

- 1. '우선대관'이라 함은 제한된 조건에서 공간조정회의 이전의 시점에 교내 공간 사용권을 학내 단위체에 분배하는 경우이다.
- 2. '우선대관 대상 공간'은 대운동장, 자이언츠구장에 한한다.

### 제3조(우선대관 가능 행사)

우선대관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해 허용한다. '단과대 이상 단위'의 행사에 한하며, 문화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.

#### 제4조(우선대관 신청)

- 1. 우선대관 신청 기간은 공간조정회의 신청 기간과 같다.
- 2. 우선대관 희망 단위체는 기간 내에 공간조정회의 신청 후 문화위원회 메일로 우선대관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.

#### 제5조(우선대관 진행)

- 1. 문화위원회는 공문을 기반으로 우선대관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.
- 2. 문화위원회는 공간조정회의 3일 전까지 우선대관 여부를 우선대관 신청 단위체에 공지한다.
- 3. 단위체 간 중복 일정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.
- 4. 우선대관이 이루어진 후, 우선대관 진행 단위체는 반드시 공간조정회의에 참석하여 타 단위체 대표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.
- 5. 우선대관이 이루어진 후에도 우선대관 진행 단위체는 반드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.

## 제6조(운영원칙)

단위체는 대관한 공간을 임의로 조정·변경·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. 공간조정회의 우선대관 가이드라인은 공간조정회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며, 공간 사용 지침은 공간조정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.